
The Beauty of HOLINESS

A SPIRIT-FILLED LIFE. A HOLY CALLING.

2026년 글로벌 감리교회 총회
9월 3일 목요일
—
데일리 저널

입법 위원회 · 본회의
요하네스버그 샌드턴 컨벤션 센터

목차

오늘의 일정	2
변경 사항 및 정정 사항	3
본회의 회의록	4
심의 청원	8
회의	8
헌법, 연대 조직, 재정	9
교리와 성례전	14
사법 행정	15
지역 교회	15
사역	18
사회적 증언	19
감리직	20

KUDO



본회의

오늘의 일정 — 9월 3일 목요일

6:30 AM – 7:00 AM	GC26 셔틀 이용 시 외부 숙박 시설
6:45 AM – 9:30 AM	GC26 셔틀 호텔
7:00 AM – 8:00 AM	도착 후 휴식 시간
7:00 AM – 6:00 PM	전시관 개관
7:00 AM	의사일정위원회
7:30 AM – 9:00 AM	등록 및 영접
7:30 AM	목회자 및 지도자 훈련(선교 체험) 행사장까지 셔틀 픽업 서비스
7:45 AM	봉헌 기도
7:45 AM	예배를 위한 문이 열립니다
8:15 AM – 9:20 AM	예배 루치아노 페레이라 다 실바 목사의 설교 완전한 성화: 용서받고 자유로워짐 고린도전서 2:9-3:4
9:00 AM – 1:00 PM	목회자 및 지도자 훈련 (선교 체험) — 소웨토
9:20 AM – 9:30 AM	전환
9:30 AM – 10:30 AM	본회의
10:30 AM – 11:00 AM	휴식 시간
11:00 AM – 12:00 PM	본회의
11:30 AM	학용품 배포 및 기도 사역으로 가는 셔틀 (선교 체험)
11:30 AM	어린이 성경 수련회 셔틀버스 (선교 체험)
11:30 AM	기독교 제자도 토론회로 가는 셔틀 (선교 체험)
12:00 PM	한국감리교회와의 연약 체결
12:30 PM – 1:30 PM	에큐메니컬 손님 및 연약 파트너들을 위한 감독 오찬
12:30 PM – 1:45 PM	식사 플랜에 가입한 분들을 위해 현장에서 점심이 제공됩니다.
12:30 PM – 2:00 PM	GC26 셔틀 호텔
1:00 PM	목회자 및 지도자 훈련에서 돌아오는 셔틀
1:00 PM – 4:30 PM	학용품 배포 및 기도 사역 (선교 체험)
1:00 PM – 5:00 PM	어린이 성경 캠프 (선교 체험)
1:00 PM – 5:00 PM	기독교 제자도 토론 (선교 체험)
1:15 PM	봉헌 기도
1:30 PM – 5:00 PM	향소위원회
1:45 PM – 3:15 PM	본회의
3:15 PM – 3:45 PM	중간
3:45 PM – 5:30 PM	본회의
4:30 PM	학용품 배포 및 기도 사역에서 돌아오는 셔틀
5:00 PM	어린이 성경 수련회 귀환 셔틀
5:00 PM	‘기독교 제자도 토론회’에서 셔틀버스 귀환
5:30 PM – 6:00 PM	스콧 존스, 김바 에바리스테, 제프 그린웨이, 케네스 레빙스턴 등 은퇴 감독들을 포함한 감독 축하 행사
6:00 PM	감독들을 위한 환영회
6:00 PM – 9:30 PM	GC26 셔틀 호텔
6:30 PM	개인적으로 저녁 식사 또는 델리게이트 만찬
7:30 PM	봉헌 리허설
8:00 PM	GC26 셔틀 이용객을 위한 외부 숙소

변경 사항 및 수정 사항

청원에 대한 정정

이전 호에 보도된 세 건의 청원에 대해 위원회가 취한 조치가 이후 변경되었습니다. 각 사례에서 인쇄된 조치는 당시 기록된 대로 정확했으나, 그 이후 기록이 변경되었습니다.

청원안 1077 — 웨슬리의 설교와 주석에 대한 포용적 해석을 명확히 할 것 (보고서 46쪽)

- 화요일자 데일리 저널에는 개정된 대로 지지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투표 결과는 찬성: 45 찬성 / 3 반대 / 2 기권. 올바른 표현: 원본대로 지원됨. 표결 결과는 변함이 없으며, 청원서 본문도 그대로입니다.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청원서의 원리/원칙/근거 부분이었는데, 이는 제정된 본문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청원안 1131 — 안수를 위한 교육 요구 사항 (보고서 253쪽)

- 화요일자 데일리 저널에는 개정된 대로 지지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투표 결과는 찬성: 57 찬성 / 1 반대 / 1 기권. 정정: 개정된 대로 지지되었으며, 찬성: 31 찬성 / 13 반대 / 4 기권.
- 위원회는 또한 그 보고서 이후 청원서를 추가로 개정했다. 화요일에 인쇄된 개정에 두 가지 변경 사항이 반영되었으며, 그 외 내용은 인쇄된 대로 유지됩니다.
- 해당 보고서 이후 다음 전공 과목들이 제거되었습니다: ‘종교개혁까지의 기독교사’, ‘종교개혁부터 현재까지의 기독교사’, ‘변증학’, ‘웨슬리안 제자도와 영성 형성’, ‘기독교 리더십과 갈등 해결’, 추가 구약 성경 수업 1개, 추가 신약 성경 수업 1개, ‘성령의 사역’.
- 해당 보고서 발표 이후 추가된 내용: “사역 위원회는 해당되는 생활 경험이나 학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요구 사항에 대한 동등성을 인정할지 여부를 재량권에 따라 결정한다. 이러한 예외 사항은 전체 교육 요구 사항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극히 드문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지원자는 교과 과정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되는 생활 경험이나 학력을 근거로 지역 사역 위원회에 학점 인정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교과 과정 이수 인정 신청은 리더십, 교회 행정 또는 Pastoral 상담 분야로만 제한되며, 교과 과정 총 요구 사항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역 및 고등 교육 위원단은 2027년 5월 1일까지 지역 사역 위원회에 동등성 인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지원자들은 글로벌 감리교(Global Methodist)가 승인한 교육 파트너와 상담하여, 학부 과정을 포함한 기존 학력이 학위 프로그램의 학점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분별함으로써, 사역을 위한 더 높은 수준의 배움과 양성을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청원안 1409 — 언약적 연대 (보고서 61쪽)

- 수요일 데일리 저널에 보고된 내용: 수정안대로 지지됨: 51 찬성 / 0 반대 / 0 기권. 정정: 수정안대로 지지됨: 53 찬성 / 1 반대 / 0 기권. 수요일 인쇄된 개정은 변경된 부분이 없으며, 인쇄된 그대로 유지됩니다.

추천

위원회 문안에 대한 수정 사항

본회의 회의록

2026년 9월 2일 수요일

회의에 앞서, 참가자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다. 데이비드 사블란 주니어 목사(메가 마닐라)는 레위기 19장 2절과 20장 7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5-16절을 본문으로 삼아 “성경적 거룩함: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음”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프 그린웨이 감독은 오전 9시 59분에 본회의를 개회하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낭독했다. 남아프리카 연회 총리사인 볼레라니 논차카자 목사(남아프리카공화국)는 아프리카에서 열리는 글로벌 감리교회 제1차 총회를 환영했으며, 개회 기도는 이시코사어로 드려졌다.

의사일정 위원회 의장인 노마 모리슨(어퍼 미드웨스트)이 이날의 의사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입법 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청원안, 한국 감리교회와의 이해 연약, 정오 12시에 예정된 주교 선거 과정 소개, 오후에 시작되는 주교 선거, 그리고 오후 4시 30분에 ‘아프리카 축하 행사’를 위해 회의를 폐회하는 순서입니다. 이날의 의사일정은 거수 투표를 통해 승인되었다.

사역 입법 위원회 위원장인 타디우스 세일즈 목사(북동부)는 화요일 일괄동의안 MIN-1A에서 제거된 ‘안수 사역의 본질 및 목회자와 교회의 관계 명확화’에 관한 청원안 1309호의 채택을 동의했다. 로라 사펠 목사(앨러게니 웨스트)는 사역 소명을 확인하는 문장에서 “안수한다”를 “감독들이 안수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로 수정하고, 다음 문장을 “감독은 사역을 수행할 목회자를 파송하며, 목회자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교리, 규율 및 사명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진다.”로 수정하여 위원회 문안을 개정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사펠 개정은 거수 투표로 가결되었다. 개정된 청원안 1309호는 354대 0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에릭 그레이슨 목사(사우스캐롤라이나)는 다음과 같은 모션을 상정했습니다:

저는 글로벌 감리교회와 한국 감리교회 간의 제안된 연약을 심의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규칙을 유예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을 드는 방식으로 규칙이 일시 중지되었다.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단 의장인 캐롤린 무어 감독은 한국 감리 교회가 2024년 코스타리카 감리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연약 관계를 맺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목요일 서명식에 한국 감리 교회 감독 8명으로 구성된 사절단이 참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이 스몰리(앨라배마 에메랄드 코스트)는 다음과 같은 모션을 제출했다:

저는 오늘의 일일 저널 6페이지에 실린 글로벌 감리교회와 한국 감리교회 간의 ‘이해연약’ 채택을 동의할 것을 기쁘게 제안합니다.

레오 박 목사(북동부)가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글로벌 감리교회와 한국 감리교회 간의 이해 연약은 거수 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확인되었다.

그린웨이 감독은 ‘하나님 나라 확장 위원단’의 재난 대응 코디네이터인 린다 데이비스 씨와 네팔에서 온 두 명의 델리게이트, 그리고 위원단 회원들을 앞으로 불러냈고, 데이비스 씨는 네팔 국민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린웨이 감독은 오전 10시 32분에 회의를 리세스한다고 선언했다.

휴회

회의는 오전 11시에 다시 소집했습니다. 사법 행정 입법 위원회 의장인 지미 타우슨 목사(사우스 조지아)는 다음 안건들을 심의할 것을 상정했습니다:

화요일자 ‘데일리 저널’ 4면에 정정된 대로, 청원 제1114호, 제1327호 및 제1045호에 대한 위원회의 조치는 거수 표결을 통해 승인되었다.

일괄동의안 JUD-2B는 거수 투표를 통해 승인되었으며, 해당 안건에 포함된 청원들은 기각되었습니다.

청원안 1414호는 359 대 0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청원 제1284호를 승인하지 말자는 위원회의 권고안이 343대 13으로 채택되었다.

헌법·연대 조직·재정 입법 위원회 의장인 클라크 앳킨스 목사(트리니티)가 다음 안건들을 상정하여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샘 그레고리(웨스트 플레인스)의 요청에 따라, 10명의 델리게이트가 이를 지지함에 따라, 청원안 1065호와 1217호가 일괄동의안 CCOF-2A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축소된 일괄동의안 CCOF-2A는 거수 투표를 통해 승인되었습니다.

일괄동의안 CCOF-2B는 거수 투표로 승인되었으며, 해당 안건에 포함된 청원들은 기각되었습니다.

청원안 1134호가 342대 11로 가결되어 즉시 발효되었다.

제1316호 청원을 승인하지 말라는 위원회의 권고안이 341대 1로 채택되었다.

교리와 성례전 입법 위원회 의장인 맷 오라일리 목사(북앨라배마)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일괄동의안 DS-2A에서 청원안 1331호가 철회된 후, 다음과 같은 안건들을 심의에 상정했다:

일괄동의안 DS-2A는 거수 투표로 승인되었습니다.

일괄동의안 DS-2B는 거수 투표로 승인되었으며, 해당 안건에 포함된 청원들은 기각되었습니다.

청원안 1443호와 관련하여, 크리스 가들리지 목사(그레이트 레이크스)는 제한 규칙이 적용되는지 물었고, 총회의 회의 비서인 톰 램브레히트 목사(트리니티)는 해당 규칙이 제1부의 해설 문단이 아닌 교리적 기준 자체에 적용된다고 답변했다. 개정된 청원안 제1443호는 359대 5로 가결되었다.

지역 교회 입법 위원회 의장인 브랜든 니콜스 목사(버지니아)는 다음 안건들을 심의할 것을 상정했습니다:

일괄동의안 LC-2A는 거수 투표를 통해 승인되었습니다.

일괄동의안 LC-2B는 거수 투표로 승인되었으며, 해당 안건에 포함된 청원들은 기각되었습니다.

제1370호 청원을 승인하지 말라는 위원회의 권고안이 345대 13으로 채택되었다.

세일즈 목사는 사역 입법 위원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건들을 상정했습니다. 벤 맥기히 목사(트리니티)의 요청에 따라, 10명의 델리게이트가 이를 지지함에 따라, 청원안 1126호가 일괄동의안 MIN-2A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축소된 형태의 일괄동의안 MIN-2A는 거수 표결을 통해 승인되었다.

일괄동의안 MIN-2B는 거수 투표로 승인되었으며, 해당 안건에 포함된 청원들은 기각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회수 및 개정된 청원안 1131호는 목요일자 ‘데일리 저널’에 재게재되도록 이관되었다.

제1442호 청원을 승인하지 말라는 위원회의 권고안이 343대 19로 채택되었다.

청원안 1450호는 351 대 3의 표차로 가결되었습니다.

회의 입법 위원회 의장인 베스 앤 쿡 목사(그레이트 레이크스)는 다음 안건들을 심의할 것을 상정했습니다:

일괄동의안 CONF-2A는 거수 투표로 승인되었습니다.

한 델리게이트의 요청에 따라, 다른 10명의 델리게이트가 이를 지지함에 따라, 청원안 1132호가 일괄동의안 CONF-2B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축소된 형태의 일괄동의안 CONF-2B는 거수 투표로 승인되었으며, 해당 안건에 포함된 청원들은 기각되었습니다.

오늘의 주문/순서와 관련하여,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 의장인 크리스 리터 목사(그레이트 레이크스)는 8개 감독 지역과 각 지역 위원회가 선정한 후보자 명단을 도출해 낸 본별 과정을 검토하고, ¶ 604.4항에 따른 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3번 지역이 세 지역 중 첫 번째 선택지였던 마크 웹 감독에게 가장 적합한 지역임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램브레히트 목사는 투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8개의 별도 투표용지가 각 지역별로 하나씩 배부되며, 8개 모두의 투표가 완료될 때까지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미선출 지역이 있을 경우 추가 투표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참석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그레인 코스트 회의의 한 평신도 대표는 투표용지에서 후보자 이름 앞에 표기된 지역 위원회 순위 번호를 제거할 것을 동의했다. 리즈 보울린(노스 앨라배마), 맷 오라일리 목사(노스 앨라배마), 이스라엘 차콘 루이즈(멕시코)는 해당 모션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으며, 엠마누엘 토마(그레인 코스트), 앨런 케이슨 목사(사우스 조지아), 마크 보웰 목사(미드 텍사스)는 이에 찬성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주교 선거 투표용지에서 순위 번호를 제거하자는 모션이 185 대 175로 가결되었다.

에드 윌리엄슨 명예 감독이 기도를 드렸다. 그린웨이 감독은 오후 12시 37분에 점심 식사를 위해 리세스를 선언했다.

점심 시간

스콧 존스 감독은 오후 1시 49분에 오후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 절차를 설명하며, 델리게이트들에게 한 명에게 두 개 이상의 투표 구역에서 중복으로 투표할 수 없음을 상기시켰다. 올란도르 보이스(그레인 코스트)는 각 지역의 투표 결과가 발표된 후에야 다음 지역의 투표용지를 배포하도록 동의했다. 베스 앤 쿡 목사(그레이트 레이크스)는 반대 의견을 밝혔고, 나이지리아 북동부 회의의 한 델리게이트는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짐 노블 목사(미드텍사스)는 각 지역을 무작위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는 개정을 제안했다. 제이슨 번햄 목사(트리니티)가 제기한 회의 진행 발언(¶ 604.5에 따라 각 지역은 동일한 투표용지에서 선출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존스 감독은 지역별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각 지역을 별도의 투표용지로 간주하게 되어 제604.5항에 위배되며, 따라서 해당 모션은 절차상 부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존스 감독은 지역별로 진행된 1차 투표용지에 앞서 참석자들을 이끌고 기도를 드렸다.

주교 선거 투표용지 #1 — 제1지역 (당선 요건: 215표; 유효표: 357표)

루터 오크너 (메가 마닐라) - 277

제1차 주교 선거 투표용지 — 제2지역 (당선 요건: 217표; 유효표: 361표)

선거 없음

주교 선거 투표용지 #1 — 제3지역 (당선 요건: 219표; 유효표 365표)

마크 J. 웹 감독 - 301

주교 선거 투표용지 #1 — 제4지역 (당선 요건: 217표; 유효표: 361표)

선거 없음

제1차 주교 선거 투표용지 — 제5지역 (당선 요건: 218표; 유효표 363표)

선거 없음

주교 선거 투표용지 #1 — 제6지역 (당선 요건: 218표; 유효표 363표)

에두아르드 케가이 감독 (러시아 중부) - 319

주교 선거 투표용지 #1 — 제7지역 (당선 요건: 220표; 유효표 366표)

선거 없음

제1차 주교 선거 투표용지 — 제8지역 (당선 요건: 219표, 유효표: 364표)

캐롤린 무어 감독 (노스 조지아) - 229

그린웨이 감독은 제2차 투표용지에 앞서 2, 4, 5, 7지역을 대상으로 한 투표용지를 배포하기 전, 참석자들과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2차 주교 선거 투표용지 — 제2지역 (당선 요건: 219표; 유효표 365표)

조나단 리 (한국계 미국인) - 273

주교 선거 투표용지 #2 — 제4지역 (당선 요건: 221표; 유효표: 367표)

선거 없음

제2차 주교 선거 투표용지 — 제5지역 (당선 요건: 219표; 유효표 364표)

선거 없음

주교 선거 투표용지 #2 — 제7지역 (당선에 필요한 득표수 219표; 유효표 365표)

폴 로울러 (미시시피-웨스트 테네시) - 234

존스 감독은 오후 3시 16분에 회의를 리세스한다고 선언했다.

휴회

본회의가 다시 소집되자, 존 페나 아우타 감독은 개인적 권한에 따른 발언권을 행사하며 향후 투표에서 자신의 후보 자격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4구역과 5구역을 대상으로 세 번째 투표용지가 배포되었다.

주교 선거 투표용지 #3 — 제4지역 (당선 요건: 216표; 유효표: 360표)

린돌 로이드 (웨스트 플레인스) - 264

제3차 주교 선거 투표용지 — 제5지역 (당선 요건: 218표; 유효표: 363표)

선거 없음

주교 선거 투표용지 #4 — 제5지역 (당선 요건: 216표; 유효표 360표)

제리 쿨라 (그레인 코스트) - 257

총회가 8개 감독 지역 각각에 감독을 선출한 후, 존스 감독은 당선된 감독들과 그 배우자들을 연단으로 초대하여 총회 참석자들에게 한 명씩 소개했습니다: 폴 로울러(미시시피-웨스트 테네시)와 그의 아내 미시; 에두아르드 케가이 감독(중앙 러시아); 제리 쿨라(그레인 코스트)와 그의 아내 루스; 마크 J. 웹 감독과 그의 아내 조디; 캐롤린 무어 감독(노스 조지아)과 그녀의 남편 스티브; 루터 오코너(메가 마닐라)와 그의 아내 마리안; 린돌 로이드(웨스트 플레인스)와 그의 아내 조니; 그리고 조나단 리(한국계 미국인)와 그의 아내. 회중은 그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드리며 손을 내밀었다.

램브레히트 목사는 이날 저녁에 열리는 ‘아프리카 기념 행사’를 알리며, 이 자리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역을 위해 특별 헌금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총회가 열리는 국가의 교회를 축복하는 전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존스 감독은 참석자들을 이끌고 기도를 드린 뒤, 오후 4시 27분에 회의를 폐회한다고 선언했다.

아프리카 축제

심의 대상 청원

위원회 조치

4일 차 달력. 일괄동의안 식별자에서 숫자는 회의 일자, 문자는 그 처리 결과를 나타내며, A는 지지, B는 반대를 의미합니다. 일괄동의안에의 배치는 허용되는 것이며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주 초에 취해졌고 이전 판에 보고된 위원회 조치는 여기에서 반복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이를 수반하는 청원 아래에 인쇄되며, 타이핑된 것이 아니라 각 위원회의 FINAL에서 생성된다. 일반 밑줄과 취소선은 청원인의 자체 표기이고, 굵은 밑줄과 취소선은 위원회의 후속 표기이다.

회의 — 청원 4건

일괄동의안 CONF-4A — 지지된 청원서

청원 1028 | ¶ 709.6 | 389쪽 총회 대의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있는 목회자에 관한 청원

수정안대로 지지됨: 찬성: 32 찬성 / 0 반대 / 0 기권.

개정:

~~(6) 총회 및 배정 기준에 따라 총회 및 연대 협의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총회에 파견할 목회자 및 평신도 대표를 선출한다.~~
(6) 총회와 연대 협의회에서 승인한 방식과 배정 기준에 따라 총회에 파견할 목회자 및 평신도 대표를 선출한다. 목회자 대의원은 글로벌 감리교회 또는 그 전신 교단에서 선거 전 최소 2년 이상 사역한, 자격을 갖춘 정회원이어야 한다. 목회자 대의원은 선거 전 최소 2년 동안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사역한 글로벌 감리교회의 양호한 상태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521.2a항의 규정에 따라 장로목사 또는 집사목사 안수를 승인받은 과도기적 본처 목사들은 정회원이어야 하며,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선출 전 최소 2년 동안 글로벌 감리교회 또는 그 전신 교단에서 사역한 경우 목회자 대표가 될 수 있다.~~

안수를 받고 사역 또는 학교에 파송된 과도기적 본처 목사들(제521.2a-b항) 안수를 받고 사역 또는 학교에 파송된 본처 전도사 및 과도기적 본처 목사들(제521.2a-b항)

최소 4분의 1 시간제로 파송되었거나 선임지위를 취득한 지 7년 이내인 고위 목회자(제520항) 고위 목회자 지위를 취득한 지 7년 이내인 고위 목회자(제520항)

행정적 또는 사법적 불만/고소를 받은 목회자 중 해당 불만이 조사 위원회 또는 재판 절차 위원회에 회부된 자는 양호한 상태로 간주되지 않으며, 델리게이트로 활동할 수 없다(사법 관행 및 절차 규칙 2.2.6).

Inactive clergy are not considered in good standing and shall not serve as delegates Inactive clergy shall not serve as delegates Lay delegates shall have been professing members of the Global Methodist Church or its predecessors for at least two years. 평신도 대표는 최소 2년 동안 글로벌 감리교회의 고백 교인이어야 한다. 목회자 대표와 평신도 대표 모두는 기표된 투표의 단순 과반수로 선출되며, 목회자는 목회자 대표에게, 평신도는 평신도 대표에게 투표한다.

대의원, 대체자 및 예비자는 연회에서 선출된 순서대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연회에서는 대의원 후보자들을 한꺼번에 추천할 수 없으며, 투표는 개별 후보자에 대해 이뤄져야 합니다.

선출된 모든 목회자/사역자/성직자 및 평신도 델리게이트는 총회를 위한 연회 대표단을 구성한다. 델리게이트들은 또한 대체 대표와 예비 대표가 연회 대표단에서 활동하도록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청원 1228 | ¶ 710.1 | 399쪽 연회 연대 협의회 회의 및 구성원 자격에 관한 명확화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35 찬성 / 0 반대 / 0 기권.

개정:

회원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원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회 평신도 지도자(들)(있는 경우); 연회 평신도 지도자(들);

청원 1456 | ¶ 608 | 335쪽 제608.1항을 추가하여 모든 연회에 지구 체제를 신설함

수정된 대로 지지됨: 찬성: 40 찬성 / 0 반대 / 0 기권.

개정:

본 청원은 ¶ 608에 ~~¶ 608.1~~이라는 하위 단락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조항을 수정합니다. 모든 연회에는 각 순회 또는 지방을 관할하는 간소화된 구조로서, 평신도 지도자를 비롯하여 여성, 남성, 청년, 어린이를 위한 사역 코디네이터를 포함하는 평신도 지도력 구조와 함께 감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이 구조는 훈련, 선교, 자원 동원과 같은 분야에서 감리사의 지도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709.4b 일부 연회에서는 각 순회구 또는 지구를 관리하기 위한 간소화된 조직 체계의 일환으로, 평신도 지도자를 포함한 평신도 지도 체제를 갖춘 감리사와 여성, 남성, 청소년, 아동 사역 담당 코디네이터가 있을 수 있다. 이 구조는 훈련, 선교, 자원 동원 등 해당되는 분야에서 감리사의 리더십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심의 — 일괄동의안에 포함되지 않음

청원 1245 | ¶ 207.4 | 429쪽 총회 대의원 선출 절차

원안대로 승인되지 않음: 1 찬성 / 36 반대 / 0 기권.

헌법, 연대 조직, 재정 — 49건의 청원

일괄동의안 CCOF-4A — 지지된 청원

청원 1016 | ¶ 813 | 531쪽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단

수정된 대로 지지됨: 찬성: 40 찬성 / 0 반대 / 0 기권.

개정:

2. 각 총회는 위원회를 의장하는 감독을 제외한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단의 모든 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위원단의 의장은 감독회에서 임명하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감독이 말합니다.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단은 의장인 감독 외에 4명의 목회자와 4명의 평신도로 구성됩니다.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회는 의장인 감독 외에 5명의 목회자와 5명의 평신도로 구성됩니다. 2026년 총회 이전에 선출된 이들은 2년 동안 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봉사하며, 2026년 총회에서 재선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총회를 기점으로, 모든 임원은 6년 임기로 선거되며, 재선 자격을 갖추면 6년의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각 임원은 6년 임기로 선출되며, 선출될 경우 두 번째 6년 임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의장과 위원들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봉사합니다. 의장과 위원들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봉사합니다.

이 위원단은 총회에서 선출된 8명의 위원과, 해당 위원단의 의장으로 임명된 현직 감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그 후, 연대 협의회에서 선출할 위원 최대 4명을 추가로 제안하여야 한다. 의장과 위원들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봉사합니다.

청원 제1048호 | ¶ 208 | 431쪽 『교리와 장정』 제207항 및 제208항 개정 청원.

원안대로 지지됨: 찬성: 36 찬성 / 1 반대 / 1 기권.

청원 1050 | ¶ 807.2 | 497쪽 연대 협의회에 대표를 파견한 연대 위원단들

수정된 대로 지지됨: 찬성: 39 찬성 / 1 반대 / 0 기권.

개정:

2.a. ¶ 808-811에 명시된 각 연대위원단은 감독이 아닌 목회자한 명과 평신도 한 명을 선출하여 연대협의회에서 위원단을 대표하도록 한다. 제808~811항 및 제814항에 명시된 각 연대 위원단은 현직 감독이 아닌 목회자 1명과 일반인/평신도 1명을 선출하여 연대 협의회에서 활동하게 하여야 한다. 위원은 총회 후 첫 번째 위원단 회의에서 각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후임자가 선출되거나 위원단의 위원 자격이 종료되는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결원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에서 후임 위원을 선출합니다.

청원 제1053호 | ¶ 807.4 | 499쪽 연대상소협의회 및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의 공석 보충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41 찬성 / 0 반대 / 0 기권.

개정:

¶ 807.4.n 개별 연대 위원단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사안을 다루는 태스크 포스를 발족하고, 직원을 배치하며, 운영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개별 연대 위원단의 범위를 벗어난 사안을 다루는 네트워크, 협회, 연합체, 태스크 포스 또는 기타 유사한 단체를 발족하고, 직원을 배치하며, 운영 기준을 설정한다.

청원 1066 | ¶ 807.4 | 501쪽 총회 예산에 대한 90% 한도 제거

수정된 대로 지지됨: 찬성: 40 찬성 / 0 반대 / 0 기권.

개정:

d. 총회가 정한 우선순위와 지침에 따라 매년 총회 예산을 편성하되, 각 연도 예산은 직전 2년 동안 수렴한 총회 연대 자금

평균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단, 2025년도 예산은 2024년도에 수령한 총 교회 연대 기금 총액의 9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총회가 제시한 우선순위와 지침에 따라, 재정·행정·연금·복지제도 위원단(FAPBC)이 제출한 권장 사항을 검토한 후 매년 총회 예산을 수립하고 승인한다. 총회가 제시한 우선순위와 지침에 따라, 재정·행정·복지제도 위원단(FAPBC)이 제시한 권고 사항을 검토하여 매년 총회 예산을 수립하고 승인한다. 총회 예산을 수립할 때 연대 협의회는 다음 재정 가치에 따라야 한다: 총회 예산을 수립할 때 연대 협의회와 FAPBC는 이를 권고함에 있어 다음 재정 가치에 따라야 한다: 총회 예산을 수립할 때 연대 협의회와 FAPBC는 이를 권고함에 있어 다음 재정 가치에 따라야 한다:

청원 1068 | ¶ 8XX | 463쪽 (신규) 글로벌 기도 네트워크 위원회

수정된 대로 지지됨: 찬성: 40 찬성 / 0 반대 / 0 기권.

개정:

8XX. 글로벌의 기도 네트워크 위원회. 글로벌 기도 네트워크 위원회는 기도와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교단 내에서 기도를 촉진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글로벌 감리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세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힘쓰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는 자원과 책임감을 위하여 연대 협의회와 협력하여 일합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책임과 관련된 모든 과정과 절차는 공개적으로 게시됩니다.

807.4 p. 글로벌 감리교회 기도 네트워크를 확언하고 협력하기 위해

청원 1074 | ¶ 807.2 | 498쪽 800번째 단락에서 구식 참조를 삭제하기 위한 청원

원안대로 지지됨: 찬성: 38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122 | ¶ 807.4 | 504쪽 교단 복지제도에서 “연금” 제거

원안대로 지지됨: 찬성: 41 찬성 / 1 반대 / 0 기권.

청원 1153 | ¶ 803.2 | 484쪽 행정 공천 위원회 제한

개정안대로 지지됨: 찬성: 39 찬성 / 0 반대 / 0 기권.

개정:

행정 공천 위원회 또는 자문팀의 회원은 자신을 공천하거나, 위원회가 자신을 공천하여, 행정 공천 위원회에서 또는 그와 함께 섬기는 기간 동안 어떠한 연대 사명/위원회에 봉사하도록 공천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 공천 위원회 회원 및 자문위원은 총회 현장에서 공천될 자격은 계속 유지됩니다.

행정 공천 위원회의 투표 회원이 연회 대표단에 의해 연대 위원단, 연대 협의회, 연대상소협의회 또는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에서 봉사하도록 선정된 경우, 그 개인은 공천 위원회가 구성된 해당 총회를 위하여 어떠한 연대 위원단, 연대 협의회, 연대상소협의회 또는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에서 봉사하도록 자신을 공천하거나 행정 공천 위원회에 의해 공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투표 회원은 조직 규정에 따라 연회 대의원단에 의해 재지명될 자격을 유지하며, 총회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청원 1172 | ¶ 443.4 | 168쪽 주택 및 복지제도 혜택 검토 절차 명확화

원안대로 지지됨: 찬성: 42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216 | ¶ 449.2 | 452쪽 연대 기금 산정 방식 명확화

수정된 대로 지지됨: 찬성: 27 찬성 / 0 반대 / 0 기권.

개정:

글로벌 감리교회의 각 지역 교회는 연대 기금을 통하여 지역 교회를 넘어선 교회의 사역에 재정적으로 기여하여야 합니다. 연회는 제449.5항에 따라 각 지역 교회에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연회는 ¶ 449.5에 따라 각 지역 교회에서 송금할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 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 지역 교회는 ¶ 449.4에 따라 매 역년 1월 30일까지 전년도 운영 수입을 보고해야 한다. 연회는 또한 지역 교회가 ¶ 449.4 및 .5에 따라 연대 기금을 산정하여 그 금액을 연회에 신고하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 지역 교회는 제449.4항에 따라 매 역년 1월 30일까지 전년도 운영 수입을 신고해야 하며, 연회는 지역 교회들이 제 449.4항 및 .5항에 따라 연결 기금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연회에 신고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다.

3. 연대 기금에는 지역 교회가 목회자 및 글로벌 감리교회의 해당 복지제도에 속한 추가 직원의 보험 복지제도 및 연금 부담금을 위해 지불해야 할 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회 구성원을 위한 보험 급여 및 연금 기여금에 대한 이러한 자금금은 지역 교회의 연대 기금 납부금에 추가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연회나 총회는 지역 교회 목회자나 직원을 위한 보험 및 퇴직 연금 제도를 포함한 복리후생 제도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연대 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총회는 지역 교회 목사나 직원을 위한 보험 및 퇴직 연금 등 복리후생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연대 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복지제도 관련 납입금은 연대 기금 송금과 별도로 지역 교회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연대 기금 송금액 산정 시, a. 다음 항목은 지역 교회 운영 수입에 포함됩니다: 확인된 기부자 및 미확인 기부자의 현금, 운영에 활용된 투자 수입, 건물 사용료 및 임대 수입, 기타 제한 없는 운영 수입. 송금할 연대 기금 금액을 산정할 때, a. 다음 항목들은 지역 교회의 운영 수입에 포함되어야 한다: 명시된 기부자와 미명시된 기부자로부터의 현금, 운영에 사용된 투자 수익, 건물 사용료 및 임대 수입, 그리고 지역 교회 조직이 징수한 기타 제한 없는 운영 수입. b. 다음 항목들은 지역 교회의 운영 수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선의 사업을 위해 지정된 현금(지역 교회가 지원하는 외부 사역); 자본 모금 운동 수입; 차입금; 비운영 비용을 위한 모금 활동; 부채 감축을 위한 수입; 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추모 현금, 기부금 및 유증; 글로벌 감리교회 특별 선교 프로그램을 위한 수입; 다른 조직의 보조금 및 지원금; 토지, 건물 또는 기타 교회 자산의 매각 수입; 지역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나 어린이집의 수입; 및 기타 비운영 수입.

청원 1249 | ¶ 1010 | 555쪽 ‘글로벌적 통합, 지역적 유연성’: ¶ 1010의 축소

수정된 대로 지지됨: 찬성: 25 찬성 / 0 반대 / 2 기권.

개정:

¶ 1010. 교회 임원들에 대한 감사. 글로벌 감리교회(지역 교회 제외)의 어느 단위에 속한 신탁 기금, 유가증권 또는 모든 종류의 자금을 보유한 모든 사람은, 적어도 연 1회, 연대 협의회 또는 해당 평의회가 지정한 단위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단위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글로벌 감리교회(지역 교회 제외)의 어느 단위에 속한 신탁 기금, 유가증권 또는 모든 종류의 자금을 보유한 모든 개인 및 단체는, 적어도 연 1회, 연대 협의회 또는 해당 평의회가 지정한 기관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단위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청원 1283 | ¶ 8XX | 468쪽 (신규) 연대 위원단의 이해 상충 문제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41 찬성 / 0 반대 / 0 기권.

개정:

이해 상충의 정의. 회원 또는 회원의 직계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혹은 회원의 가정에 거주하는 자)이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때 이해 상충이 존재합니다:

위원단 또는 기타 기구가 고려 중인 어떤 법인, 계약, 보조금, 프로그램 또는 사항에 대한 직간접적인 재정적 이해관계(보상, 투자, 소유권, 잠재적 이익 또는 손실 포함); 또는 회원 또는 구성원의 객관성이나 판단의 독립성을 저해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그 밖의 개인적, 직업적 또는 관계적 이해관계.

목적. 글로벌 감리교회의 모든 연대 위원단, 협의회, 총회,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원은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바탕으로 행동해야 하며, 교회의 최선의 이익을 공정하게 섬기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이거나 표면적으로 비칠 수 있는 이해 상충을 피해야 한다. 연대 협의회와 감독회는 2026년 총회 폐회 후 90일 이내에 ‘이해 상충 및 기피 정책’을 마련하고 승인해야 한다. 연대 협의회와 감독회가 정책을 승인한 후, 글로벌 감리교회의 모든 연대 위원단, 협의회, 감독회,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원은 선출, 파송 또는 해당 정책의 채택 시 정책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청원 1458 | ¶ 805.1 | 493쪽 운영의 탁월성: 위임에 따른 직접적인 인사 책임 및 권한 부여

수정된 대로 지지됨: 찬성: 37 찬성 / 0 반대 / 2 기권.

개정:

¶ 805. 운영. 여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연대위원단은 자체 업무와 사업을 구성할 권한을 가진다.

1. 직원. 각 연대 위원회는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직원 직책은 연대협의회가 정한 예산 한도에 따라 연대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대 운영 책임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은 연대 운영 책임자(¶ 815)에 의해 모집, 지정 및 평가되며, 임의로 고용됩니다.

연대 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직원은 연대 협의회에서 수립한 정책과 절차에 따라 해당 위원회 또는 그 지정된 리더십에 의해 채용, 감독 및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직원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임의 고용 직원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연대 작업 임원은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교단 정책 준수를 보장해야 하지만, 위원회 직원에 대해 직접적인 감독 또는 평가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 805. 운영. 본 규정에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각 연대 위원단은 자체 업무 및 운영 체계를 수립할 권한을 가진다.

1. 직원. 각 연대 위원회는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직원 직책은 연대협의회가 정한 예산 한도에 따라 연대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대 운영 책임자를 제외하고, 모든 직원은 연대 운영 책임자(¶ 815) 또는 그 지정인이 채용, 배치 및 평가를 담당하며, 임의 해고 가능한 직원으로 근무한다.

a. 인력 충원을 목적으로 지정된 특별 보조금 또는 기부금은, 해당 금액의 가용 여부에 따라 그리고 연대 협의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임시로 추가 직원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직원은 보조금 또는 지정 기부금의 목적을 존중하여, 연대 운영 책임자 또는 그 지정인이 채용하고 관리/지휘/감독해야 한다.

2. 연대 위원단은 교회를 대신하여 직원을 고용하고, 교단 내의 조직, 선교 단체 및 교단 산하 기관은 물론, 다른 교회 기관,

또는 교회 외 조직 및 사역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명을 수행하거나 특정 프로젝트를 조정할 수 있다. 단, 그 사명 및/또는 신학적 입장이 연대 위원단이나 글로벌 감리교회의 사명 및/또는 신학적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와는 어떠한 고용 계약이나 계약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위원장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계약은 반드시 연대 협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괄동의안 CCOF-4B — 청원 기각

청원 제1049호 | ¶ 210.3 | 443쪽 『교리와 장정』 제210항 개정 청원.

원안대로 승인되지 않음: 찬성: 41 찬성 / 1 반대 / 0 기권.

청원 1073 | ¶ 804.1 | 486쪽 800번째 단락에서 구식 참조 사항을 삭제해 달라는 청원

다음에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45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110 | ¶ 813.2 | 535쪽 에큐메니칼 관계 위원회 규정에서 불필요한 문구 제거

다음 안을 우선하여 거부됨: 찬성: 40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116 | ¶ 813.5 | 537쪽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단의 역할 명확화

다음 안을 우선하여 거부됨: 찬성: 40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117 | ¶ 813.7 | 540쪽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단의 ‘연합 계획’ 과정에 대한 명확화

다음 안을 우선하여 거부됨: 찬성: 40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121 | ¶ 807.4 | 503쪽 연대 협의회가 제공하는 교단 복지제도 혜택에 대한 역할 삭제

다음에 찬성하여 부결됨: 찬성: 41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143 | ¶ 803.3 | 485쪽 총회 위원단 위원 자격

원안대로 승인되지 않음: 찬성: 37 찬성 / 0 반대 / 1 기권.

청원 1241 | ¶ 208 | 433쪽 총회에서 이해 상충 방지

다음에 찬성하여 부결됨: 찬성: 41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242 | ¶ 808.2 | 510쪽 미전도 민족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

다음에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38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254 | ¶ 813.6 | 539쪽 ‘글로벌적 통합, 지역적 유연성’: ¶ 813.6의 한 문장 삭제

다음 안을 우선하여 거부됨: 찬성: 40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255 | ¶ 813.5 | 538쪽 ‘글로벌적 통합, 지역적 유연성’: ¶ 813.5의 축소

다음 안을 우선하여 거부됨: 찬성: 40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268 | ¶ 808.2 | 511쪽 ‘글로벌한 통합, 지역적 유연성’: ¶ 808.2c의 일부 및 ¶ 808.2d 전체 삭제

다음에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38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269 | ¶ 808.2 | 512쪽 ‘글로벌의 통합, 지역적 유연성’: ¶ 808.2.A.1-5 및 ¶ 808.2.b 삭제

원안으로 승인되지 않음: 찬성: 38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270 | ¶ 807.4 | 505쪽 ‘글로벌의 통합, 지역적 유연성’: ¶ 807.4.i 조항 삭제

다음에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46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271 | ¶ 807.4 | 506쪽 ‘글로벌의 통합, 지역적 유연성’: ¶ 807.4 조항 삭제. D. 4-5

원안대로 승인되지 않음: 찬성: 38 찬성 / 2 반대 / 0 기권.

청원 1275 | ¶ 449.9 | 459쪽 글로벌 통합, 지역적 유연성: ¶ 449.9 삭제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49 찬성 / 1 반대 / 0 기권.

청원 1279 | ¶ 208.13 | 440쪽 ‘글로벌적 통합, 지역적 유연성’: ¶ 208.13의 문구 수정

원안대로 승인되지 않음: 찬성: 36 찬성 / 1 반대 / 1 기권.

청원 1280 | ¶ 208.10 | 439쪽 ‘글로벌적 통합, 지역적 유연성’: ¶ 208.10의 문구 수정

원안대로 승인되지 않음: 찬성: 36 찬성 / 1 반대 / 1 기권.

청원 1317 | ¶ 207.1 | 427쪽 ‘글로벌적 통합, 지역적 유연성’: ¶ 207.1 제거

다음 안을 우선하여 거부됨: 찬성: 40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318 | ¶ 207.2 | 428쪽 ‘글로벌한 통합, 지역적 유연성’: ¶ 207.2의 문장 일부 제거

다음 안을 우선하여 거부됨: 찬성: 40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319 | ¶ 207.8 | 430쪽 ‘글로벌의 통합, 지역적 유연성’: ¶ 207.8 제거

다음 안을 우선하여 거부됨: 찬성: 40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320 | ¶ 208 | 434쪽 ‘글로벌의 통합, 지역적 유연성’: ¶ 208의 문장 일부 제거

다음에 찬성하여 부결됨: 찬성: 41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안 1417 | ¶ 1012.9 | 560쪽 구역회 권한 및 교회 전체 투표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39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422 | ¶ 808.2 | 513쪽 신설 위원단: 글로벌 감리교회 재난 구호 및 인도적 지원 사역 위원단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38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444 | ¶ 212.1 | 446쪽 총회(GC)가 웨슬리의 설교와 메모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

원안대로 승인되지 않음: 찬성: 43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447 | ¶ 212.1 | 447쪽 결혼에 관한 명확한 교리적 기준 채택 허락

원안대로 승인되지 않음: 찬성: 42 찬성 / 2 반대 / 0 기권.

개별 심의 — 일괄동의안에 포함되지 않음

청원 1025 | ¶ 610.5 | 344쪽 타인종·다문화 교육

회부됨: 찬성: 8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088 | ¶ 207 | 425쪽 연회의 업무 및 목적 명확화

수정안대로 지지됨: 찬성: 41 찬성 / 0 반대 / 1 기권.

개정:

제6조. 연회—연회는 공동 사역과 책임감을 위해 목회자와 평신도를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됩니다 연회는 목회자와 평신도로 구성됩니다. 교리와 장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모든 목회자는 회원이 됩니다 각 구역은 최소한 동수의 평신도 회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각 교구, 지구 또는 지방회에서 평신도 회원을 적어도 동등한 수만큼 선출해야 한다. 연회는 지방 또는 연회를 통해 추가 평신도 회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각 구역에는 파송된 목회자 숫자 만큼 평신도 회원을 둘 수 있다.

4. 총회에 파견할 목회자 및 평신도 대표를 선출하기 위함. 총회에서 정한 인원에 따라 총회에 파견할 목회자 및 평신도 대표를 선출하기 위함. 목회자 대의원은 정회원이어야 하며, 신분이 양호해야 한다. 평신도 대표는 글로벌 감리 교회의 고백 교인이어야 한다. 목회자 대표와 평신도 대표 모두 단순 다수결로 선출하며, 목회자 대표는 목회자 투표로, 평신도 대표는 평신도 투표로 선출한다.

8. 목회자의 복지를 위한 최소 기준을 마련하며, 여기에는 최저 임금/최저 사례, 목사관 및 주택 기준, 건강 보험, 그리고 필요 시 기타 복지제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목회자들의 복지를 위한 최소 기준을 마련하며, 여기에는 최저 임금/최저 사례, 주택, 건강 보험 및 희망 시 기타 복지제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9. 한 연회에서 다른 연회로, 또는 다른 연회로부터의 교회 이전을 단순 다수결로 승인한다. 단순 다수결 투표를 통해, 한 교회가 연회로 편입되거나 연회에서 탈퇴하는 것을 승인한다.

10. 폐쇄된 교회의 기록과 모든 구역회의 연차 보고서를 포함하여 연회 기록을 보관한다. 연회 기록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청원 1089 | ¶ 208 | 432쪽 총회 회의에 관한 명확화

수정된 대로 지지됨: 찬성: 37 찬성 / 3 반대 / 2 기권.

개정:

제7조. 총회—감리교의 “함께 의논한다”는 전통에 따라, 글로벌 감리교회의 총회는 6년에 한 번씩 소집되어야 한다. 총회는 200명 이상 700명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절반은 목회자, 절반은 평신도로 하며, 총회가 결정한 비례에 따라 연회에서 선출한다. 현직 감독, 연대상소협의회 위원 또는 총회 직원은 총회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총회는 그 숫자 안에서, 재량에 따라 다른 자치 감리교 기관에서 발언권과 투표권이 있거나 혹은 없는 제한된 대의원의 수를 포함시킬 수 있다. 특정 사안이나 필요를 다루기 위한 특별총회는 총회 또는 감독회의 다수결 투표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총회의 특별 회기는 직전 총회의 대의원 또는 그 합법적 후임자로 구성된다. 필요한 경우, 총회는 감독회와 연대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비대면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청원 1094 | ¶ 211 | 444쪽 항소권에 제한 규칙의 문구를 포함시키고 한 가지 규칙을 삭제하도록 수정

수정안대로 지지됨: 찬성: 43 찬성 / 0 반대 / 0 기권.

개정:

~~¶ 211. 제10조. 항소권 — 총회는 교회를 위해 사법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 체계는 우리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재판 및 항소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우리 목회자의 위원회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되며; 또한 교인들의 교회 내 재판 또는 위원회 재판을 받을 권한과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청원안 1095 | ¶ 212.1 | 445쪽 2026년 총회에서 제안될 교리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칙을 수정할 것

원안대로 지지됨: 찬성: 43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제1097호 | ¶ 213 | 448쪽 개정 과정 명확화 및 구식 표현 제거

수정된 대로 지지됨: 찬성: 40 찬성 / 0 반대 / 0 기권.

개정:

~~제12조. 개정 — 헌법 개정은 총회 또는 연회에서 발의할 수 있습니다.~~

헌법 개정안은 다음의 어느 곳에서든 발의될 수 있다. 즉, 총회, 총회 입법 위원회, 연회 정기총회, 연회 대표단, 지역 교회 또는 신앙 고백을 한 교인이다.

¶ 213. 제12조. 개정 — 본 헌법에 대한 개정안은 다음 중 하나의 절차를 통해서만 총회에 제출될 수 있다: 연회에서, 정식으로 소집된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 연회 대표단: 대표단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되고, 그 투표 결과가 대표단 의장과 비서에 의해 인증된 경우; 또는 총회: 총회 산하 입법 위원회 중 하나의 권고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출석 및 투표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된 경우.

어떠한 개인도 헌법 개정안을 총회에 직접 제출할 자격을 갖지 못한다. 개인은 연회 또는 연회 대표단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해당 제안서는 위에서 요구하는 공식적인 승인 및 증서를 받은 후에야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청원 1197 | ¶ 1012.9 | 557쪽 임원회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수정된 대로 지지됨: 찬성: 37 찬성 / 5 반대 / 0 기권.

개정:

f. 재산의 구매, 판매, 임대, 건축 및 저당. 제1012.3항에 규정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지역 교회가 부동산을 매입, 매각, 임대 또는 저당 설정하거나 건물을 신축 또는 개축하기 전에, 해당 조치를 승인하는 결의안이 구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며, 해당 회의의 구성원들은 법인체의 구성원 자격으로 행동하며, 해당 회의의 목적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 회의에서 출석하여 다수결 투표로 가결되어야 한다. 단, 해당 회의 및 제안된 조치에 대한 통지는 설교와 주간 소식지, 주보, 뉴스레터 또는 지역 교회의 전자 공지 등을 통해, 또는 지역 법률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기타 수단을 통해 해당 회의 및 제안된 조치에 대한 통지가 10일 이상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담임목사가 해당 조치에 대한 서면 동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1012.3항에 부여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지역 교회가 부동산을 매입, 매각, 임대 또는 저당 설정하기 전, 또는 건물과 신축이나 개축을 하기 전에, 해당 조치를 승인하는 결의안이 관할 교회 총회에서, 그 회원들이 법인체의 회원 자격으로, 제438항에 따라 해당 목적을 위해 소집된 정기 또는 임시 회의에서 출석하여 다수결 투표로 해당 조치를 승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제안된 조치를 승인하는 결의안은 (교회법인) 이사회가 해당 조치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계약, 증서, 매매 증서, 모기지 또는 기타 서면 문서를 여기에 명시된 대로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권한을 부여한다. 정기 또는 임시 회의에서 이사회는 그런 조치를 취하거나 지역 법률에서 필요로 하거나 요구하는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해야 합니다. 승인된 조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필수 계약, 증서, 임대차 계약서, 매매 증서, 모기지 또는 기타 서면 문서는 법인의 임원 중 2명이 법인의 이름으로 작성, 서명해야 이렇게 작성되는 문서는 (교회)법인의 결정으로 구속력과 효력을 갖습니다.

청원 1281 | ¶ 208.9 | 438쪽 ‘글로벌적 통합, 지역적 유연성’: ¶ 208.9에 추가 사항

원안대로 가결: 찬성: 29 찬성 / 9 반대 / 0 기권.

청원 1286 | ¶ 805.2 | 494쪽 규칙에 대한 항소 필요성

원안대로 승인되지 않음: 찬성: 0 찬성 / 0 반대 / 0 기권.

교리와 성례전 — 7가지 청원

일괄동의안 DS-4B — 청원 기각

청원서 1060 | ¶ 104 | 11쪽 성경의 권위에 대한 입장 강화

원안대로 승인되지 않음: 찬성: 44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제1240호 46쪽 교리적 표현 및 경계의 명확화를 위한 결의안

원안대로 승인되지 않음: 찬성: 54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324 | ¶ 102.2 | 3쪽 웨슬리안의 구원 방법에서 ‘타락’이라는 용어 제거

원안대로 승인되지 않음: 찬성: 51 찬성 / 1 반대 / 0 기권.

청원 1325 | ¶ 102.3 | 4쪽 웨슬리안의 구원 방법에서 “원죄”의 함의를 제거하기

원안대로 승인되지 않음: 찬성: 51 찬성 / 1 반대 / 0 기권.

청원서 1455 48쪽 결의안: ‘총칙 및 신앙 고백에 관한 글로벌 감리교회 해설’ 제정을 위한 결의안

수정된 대로 승인되지 않음: 찬성: 54 찬성 / 0 반대 / 2 기권.

개정:

이 주석은 시편 78편 1-11절과 유다서 3-4절을 참조하여, 우리 창시자들이 가르친 대로 미래 세대를 위해 진정한 교리적 믿음의 신학적 성경 내용에 대한 요약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는 교단의 신앙 고백을 보호하고, 감독, 총리사, 감리사, 장로목사, 집사목사 및 설교를 담당하는 다른 모든 교단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성경과 기독교 전통에 제시되고 웨슬리안 관점에서 해석된 사도적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제자도, 교리 및 공의로운 사역 위원회는 감독회에서 지명하고 연대 협의회에서 승인한 저명한 정통 신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감독할 것입니다. 총회 기간 중 심의(12)년마다 새로운 태스크 포스가 임명되어, 상황화에 비추어 글로벌 감리교회 총칙과 신앙 고백, 그리고 교리적 기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글로벌 감리교회는 새로 형성된 교단으로서 웨슬리안 관점에서의 정통 기독교 가르침에 대한 공유된 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그 연대 안에서 일치성을 발전시키고자 하며, 또한 그러한 일치성을 증진하려면 글로벌 감리교회의 교리적 기준에 대한 이해와 준수가 필요하고, 또한 그러한 이해와 준수에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전 세계 구성원 전체에 걸친 일관되고 지속적인 설교와 가르침이 필요하며, 또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설교와 가르침에는 모든 연령과 문화를 위하여 개발된 탁월한 교육 자료가 필요하므로, 이에 결의하건대, 총회는 제자도·교리·공의로운 사역 위원단 또는 이 목적을 위해 위원단이 구성한 태스크 포스에 총칙과 신앙 고백(또는 헌 교리 진술을 승계하는 모든 문서)에 포함된 교리 진술에 관한 해설서를 집필하고 출판하도록 지시한다. 이 해설서는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가 교리 진술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설교나 타인을 가르칠 때 그 이해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개별 심의 — 일괄동의안에 포함되지 않음

청원 제1454호 47쪽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운동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결의안

원안대로 지지됨: 찬성: 30 찬성 / 13 반대 / 10 기권.

청원 제1462호 49쪽 결의안: 회중 찬양 자료의 인정

원안대로 승인되지 않음: 찬성: 40 찬성 / 12 반대 / 3 기권.

사법 행정 — 청원 1건

개별 심의 — 일괄동의안에 포함되지 않음

청원 1115 | ¶ 8XX | 464쪽 (신규) 적격성 관련 청원

원안대로 승인되지 않음: 찬성: 34 찬성 / 0 반대 / 0 기권.

지역 교회 — 청원 21건

일괄동의안 LC-4A — 지지된 청원서

청원 1144 | ¶ 433 | 127쪽 / ¶ 423 글로벌 감리교회 멤버십 이전 절차 개정안

원안대로 가결: 찬성: 47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168 | ¶ 442 | 156쪽 재무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의 필요성 명확히 하기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49 찬성 / 0 반대 / 0 기권.

개정:

본 청원은 ¶ 442를 수정하여 새로운 ¶ 4를 추가합니다. 442.4 및 442.5를 추가하고, 나머지 , 4. 항의 번호를 재지정합니다. 재정 비서: 현금을 계수하는 담당자를 감독하고, 모든 수령 자금이 재정위원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예치되도록 하며, 모든 공헌과 수령 자금의 기록을 유지합니다. 구역회는 재정 비서의 일부 또는 모든 의무를 수행할 사람을 고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는 교회 협의회, 목회 협력 위원회, 재정위원회 혹은 재단 이사회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봉사할 수 없습니다. 재정 비서 직책은 재무와 한 사람이 겸임할 수 없으며, 이 두 직책을 맡은 자는 직계 가족이 아니어야 합니다. 어떠한 목사의 직계 가족도 그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 또는 구역에서 재정 비서로 봉사할 수 없습니다.

5. 재무: 모든 미지정 자금을 지역 교회 예산에 따라 지출하고, 지정된 자금은 지정에 따라 분배하며, 모든 연회와 교단의 연대 기금 및 자산금액을 매월 연회 재무 또는 해당 기관에 송금하고, 수입 및 지출 자금에 대해 정기적으로 재정위원회 및 교회 협의회에 상세한 보고를 합니다. 재무는 지역 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충분히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되어야 합니다. 구역회는 재무의 일부 또는 모든 의무를 수행할 사람을 고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는 교회 협의회, 목회 협력 위원회, 재정위원회 또는 재단 이사회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봉사할 수 없습니다. 재무 직책은 재정 비서와 한 사람이 겸임할 수 없으며, 이 두 직책을 맡은 자는 직계 가족이 아니어야 합니다. 어떠한 목사의 직계 가족도 그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 또는 구역에서 재무로 봉사할 수 없습니다.

4. 재무 임원: 각 지역 교회는 두어야 재무 비서와 재무를 선출해야 한다. 이러한 임원은 서로 분리되어야 하며, 동일한 사람이나 직계 가족이 이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해당 교회에 파송된 목사의 가족 중 누구도 두 직분 중 어느 하나에도 취임할 수 없다. 단, 예외적인 상황에서 감리사나 감독이 적절한 안전 조치를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러한 안전장치에는 최소한 목사/목회자와 무관한 사람이 매월 재정 상황을 검토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며, 매년 감리사나 감독으로부터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역회는 두 직책 중 어느 한 쪽의 의무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할 인원을 채용할 수 있다. 그렇게 고용된 사람은 자신의 고용을 담당하는 기구 또는 교회의 재정 감독을 담당하는 기구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a. 재무비서. 재무 담당 비서는 현금 집계 과정을 감독하고, 수령한 자금이 재정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예치되도록 하며, 기부금 및 기타 수령 자금에 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b. 재무. 재무 담당자는 교회 예산에 따라 비지정 기금을 집행하고, 지정 기금은 그 용도에 따라 배분하며, 연대 기금 및 기타 의무를 해당 수령인에게 송금하고, 재정위원회와 교회 협의회에 정기적인 재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원 1174 | ¶ 447 | 198쪽 재정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49 찬성 / 0 반대 / 0 기권.

개정:

3. 지역 교회의 연간 예산에 반영될 모든 재정 요청 사항은 재정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재정위원회는 매년 지역 교회의 종합 예산을 편성하고, 연간 예산을 수립하여 교회 협의회 또는 구역회에 제출하여 검토 및 채택을 받아야 한다. 재정위원회는 교회 협의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다음과 같은 책임을 맡아야 한다. 수입 및 구현/시작하여, 교회 협의회가 채택한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교회 임원회의 지시에 따라 받은 기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재무와 재정 총무를 지도하는 교회협의회와 지시를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승인된 예산, 교회 협의회 지침 및 제442항에 규정된 재무 임원의 책임에 따라 기금 관리를 감독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한 직계 가족에 속한 사람이 아닌 최소 두 명을 현금 계수자로 지정해야 한다. 이들은 재정부장의 감독 하에 일해야 합니다. 수령한 모든 기금의 기록은 재정 총무와 재무 담당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수령한 자금은 재정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지역 교회 명의로 지체 없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재정 총무는 기부금 및 자금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5. 재무 임원. 재무 담당 비서와 재무 담당자의 의무는 ¶ 44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원 1180 | ¶ 455 | 214쪽 교회 회중의 신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과정 명확화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49 찬성 / 0 반대 / 0 기권.

개정:

1. 교회의 현 담임 목사가 글로벌감리교회의 교리와 관행에 반하는 교리나 관행을 장려하는 경우, 감독은 그 담임 목사를 해임하고 글로벌감리교회의 교리와 관행을 장려하고 옹호할 목사를 파송해야 한다. 그 후 신임 목사는 신임 목사가 교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허락해야 한다.

1. 회중의 현 목사/목회자가 글로벌 감리교회의 교리나 관행과 상반되는 교리나 관행을 장려할 경우, 감리사회는 감독에게 해당 목사/목회자를 해임하고 글로벌 감리교회의 교리 및 관행을 옹호하고 장려할 목사/목회자를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 후, 신임 목사는 시간을 허락하여 감리사는 신임 목사와 협의하여 교회가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청원 1213 | ¶ 446.3 | 191쪽 재단 이사회 조직에 대한 명확화

원안대로 지지: 찬성: 48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214 | ¶ 446.4 | 193쪽 재단 이사회 회의 및 책임에 대한 명확화

개정안대로 지지됨: 찬성: 48 찬성 / 0 반대 / 0 기권.

개정:

d. 구역회의 지시에 따라, 재단 이사회는 지역 교회에 이루어진 모든 유증을 수령하고 관리하며, 모든 신탁을 수령하고 관리하고, 적용 가능한 민사 법에 따라 지역 교회의 모든 신탁 펀드를 투자하여야 한다. 지역 교회가 소재한 국가, 주 또는 행정 구역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역회는 이사회에 통지하면 유증, 신탁 및 신탁 기금을 수령, 관리 및 투자할 수 있는 권한, 의무 및 권위를 영구 기부 위원회 또는 개체 교회 재단에 위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역회는 재단 이사회에 통지한 후, 유증, 신탁 및 신탁 기금을 수령, 관리 및 투자하는 권한, 의무, 권위를 영구 기금 위원회나 지역 교회 재단 등 다른 단체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e. 이사회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방해하는 기존의 물리적, 건축적 또는 의사소통 장벽을 발견하고 식별하기 위하여 건물, 부지 및 시설에 대해 매년 접근성 감사검토를 실시하고, 그러한 모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강단 구역을 포함한 모든 교회 자산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접근성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과 일정(¶ 446.5e)을 수립. 연간 접근성 감사검토 및 해당되는 경우, 접근성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과 일정 (¶ 446.5e).

청원 1357 | ¶ 446.1 | 189쪽 ‘글로벌적 통합, 지역적 유연성: 재단 이사 선거 절차 간소화’

개정안대로 지지됨: 찬성: 48 찬성 / 0 반대 / 0 기권.

개정:

재단 이사회의 회원들은 구역회 또는 교회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구역회에서는 임기, 순환 근무 순서 및 재선 자격을 결정해야 한다.

일괄동의안 LC-4B — 청원 기각

청원 1124 | ¶ 442.1 | 157쪽 평신도 지도자 공인된 평신도 사역자 요구 사항

다음 안을 채택하여 부결: 찬성: 49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347 | ¶ 447.11 | 206쪽 ‘글로벌의 통합, 지역적 유연성’: 보고 절차 및 위원회 구성 간소화

다음 안을 채택하여 부결: 찬성: 49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348 | ¶ 447.7 | 205쪽 ‘글로벌의 통합, 지역적 명확성: 재무 감사 요구 사항의 간소화’

다음 안을 채택하여 부결: 찬성: 49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349 | ¶ 447.6 | 204쪽 ‘글로벌적 통합, 지역적 명확성: 재정 정책 요구 사항의 간소화’

다음 안을 채택하여 부결: 찬성: 49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350 | ¶ 447.3 | 203쪽 ‘글로벌한 통합, 지역적 명확성: 예산 및 재정 감독의 간소화’

다음 안을 채택하여 부결: 찬성: 49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351 | ¶ 447.2 | 202쪽 ‘글로벌한 통합, 지역적 명확성: 재정 관리 책임의 간소화’

다음 안을 채택하여 부결: 찬성: 49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352 | ¶ 447.1 | 201쪽 ‘전반적인 통합, 지역적 유연성: 재정위원회 구조 간소화’

다음 안을 채택하여 부결: 찬성: 49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제1353호 | ¶ 446.5; | 197쪽 446.6 ‘전반적인 통합, 지역적 명확성’: 재단 이사회 권한 및 책임의 간소화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48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354 | ¶ 446.4 | 196쪽 ‘글로벌의 통합, 지역적 유연성’: 재단 이사회 회의 간소화

다음 안을 채택하여 부결: 찬성: 49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355 | ¶ 446.3 | 192쪽 ‘글로벌적 통합, 지역적 유연성’: 재단 이사회 조직 간소화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48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356 | ¶ 446.2 | 190쪽 ‘글로벌적 통합, 지역적 명확성’: 재단 이사 공석 및 제거 절차 간소화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48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358 | ¶ 446 | 185쪽 ‘글로벌한 통합, 지역적 유연성’: 재단 이사회 구조 간소화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48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372 | ¶ 442.1 | 159쪽 ‘글로벌적 통합, 지역적 명확성: 평신도 지도자의 역할 간소화’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45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435 | ¶ 446 | 186쪽 비회원도 재단 이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재단 이사회 구성원 자격 요건 개정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48 찬성 / 0 반대 / 0 기권.

사역 — 청원 12건

일괄동의안 MIN-4A — 지지된 청원

청원서 1234 | ¶ 516.1 | 296쪽 목회자 자격 증명 전송

수정된 대로 지지됨: 찬성: 53 찬성 / 0 반대 / 0 기권.

개정:

2. 다른 교단에서의 이전.

다른 기독교 교단에서 글로벌 감리교회로 전입을 신청하는 목회자 중 현재의 안수 자격 증명서를 포기하고 글로벌 감리교회 목회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 참조 인물이 기재된 정식 이력서; (b) 공식적인 대면 심사 과정을 갖춘 교단에서 발급한 안수 증명서. (c)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모든 학력에 대한 공식 성적 증명서; (d) 가능한 경우, 해당 목회자의 서면 요청 시 전 소속 교단에서 보관 중인 모든 인사 파일 사본을 사역 위원회로 송부. 다른 기독교 교단에서 글로벌 감리교회로 이적을 신청하는 목회자 중 현재의 안수 자격 증명서를 포기하고 글로벌 감리교회 목회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 추천인이 포함된 사역 이력서; (b) 공식적인 대면 심사 절차를 거친 교단에서 발급한 안수 증명서; (c) 사역을 위한 교육 이수 증명서; (d) 가능한 경우, 해당 목회자의 요청에 따라 전 소속 교단의 인사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사역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기독교 교단에서 글로벌 감리교회로 전입을 신청하는 목회자 중 현재의 안수 자격 증명서를 포기하고 글로벌 감리교회 목회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 추천인이 포함된 사역 이력서; (b) 공식적인 심사 과정을 갖춘 교단에서 발급한 안수 증명서. 지역 교회, 네트워크 또는 협회에서 행한 안수는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c) 목회 사역을 위한 교육 이수 증빙 자료; (d) 가능한 경우, 해당 목회자의 요청에 따라 이전 교단의 인사 파일을 사역 위원회로 송부받는 것.

청원 1235 | ¶ 517 | 297쪽 타 교단 출신 목회자의 파송

수정된 대로 지지됨: 찬성: 54 찬성 / 0 반대 / 3 기권.

개정:

1. 사역 위원회의 추천과 연회 목회자 세션의 승인에 따라, 감독은 양호한 상태이며 최소 5년의 봉사 경력이 있는 다른 기독교 교단 소속 목회자를 그들의 교단 소속을 유지한 채로 임지 또는 에큐메니컬 사역에 파송할 수 있습니다. 사역 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해당자는 유효한 집사목사로 파송된다. 승인된 유효한 집사목사는 2년 이내에 다음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웨슬리안 신학과 교리, 글로벌 감리교회 감리교 역사와 정치, 웨슬리안 성례전 및 예배 이해, 웨슬리안 제자도와 영적 형성. 필수 과목을 이수하면 유효한 집사목사는 사역 위원회에 출석하여 면접을 받고, 이를 통해 유효한 장로목사가 될 준비가 되었는지 심사받게 됩니다. 그들은 연회 사역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약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계속 이행하는 한, 유효한 집사목사 또는 유효한 장로목사로 파송된다.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파송을 받으면서 다른 교단과의 소속 관계를 유지하는 목회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a) 그 글로벌 감리교회의 목회자 회원 자격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자신의 기독교 신앙과 사역 소명에 대한 증언. (2) 범죄 경력 및 신용 조회, 성적 부정행위 또는 아동 학대에 관한 신고에 대한 허가 및 공개 동의. (3) 후보자가 증범죄나 범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으며, 성추행이나 아동 학대에 대해 서면으로 고발된 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성명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중범죄나 경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내역 또는 성추행·아동 학대에 대한 서면 고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성명서. (b) 글로벌 감리교회 교리를 가르치고, 지지하며, 유지하겠다는 동의서. (c) 심리 시험에 동의합니다. (d) 감리사 및 사역 위원회와의 면담을 통해 『교리와 장정』을 읽었고, 이해하며, 준수할 것과 글로벌 감리교회의 규율과 정치를 지지하고 유지할 것을 입증한다. (e) 다른 기독교 교단에서 안수받은 성직자로서 적절한 자격 증명을 제시하고, 공식적인 대면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f) 교육 요구 사항 이수 현황은 사역 위원회 연례 면담 시에 제시되어야 한다.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파송을 받으면서도 다른 교단과의 소속 관계를 유지하는 목회자는 성직 자격 증명 이전에 관한 제516.1-2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 요구 사항을 3년 이내에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자는 a) 유효한 집사목사 자격이 중단되거나, b) 목회 후보자 지위로 전환되어 제506항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일괄동의안 MIN-4B — 청원 기각

청원안 1005 | ¶ 520 | 305쪽 선임지위 목회자의 투표권 개정안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48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제1047호 | ¶ 512 | 285쪽 『교리와 장정』 제512항을 개정하기 위한 청원.

부결: 찬성: 53 찬성 / 0 반대 / 2 기권.

청원 1182 | ¶ 512.1 | 289쪽 본처 전도사 파송에 관한 명확화

부결: 찬성: 53 찬성 / 0 반대 / 2 기권.

청원 1183 | ¶ 512.2 | 290쪽 본처 전도사에 대한 성찬 집행 권한 확대에 관한 명확화

부결: 찬성: 53 찬성 / 0 반대 / 2 기권.

청원 1264 | ¶ 810.3 | 525쪽 ‘글로벌의 통합, 지역적 유연성’: ¶ 810.3 삭제 – 승인 위원회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46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328 | ¶ 518.6 | 304쪽 육아휴직 복원

부결 결과: 찬성: 47 찬성 / 1 반대 / 1 기권.

청원 1419 | ¶ 520 | 306쪽 해당 단락의 조건부 삭제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48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서 1420 | ¶ 517 | 299쪽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유효한 장로목사와 유효한 집사목사의 임기 정의

다음에 의해 부결됨: 찬성: 54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서 1469 | ¶ 503.1 | 86쪽 성스러운 결혼 예식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51 찬성 / 0 반대 / 0 기권.

개별 심의 — 일괄동의안에 포함되지 않음

청원 1233 | ¶ 516.1 | 295쪽 목회자 전임

수정안 부결: 찬성: 7 찬성 / 47 반대 / 3 기권.

개정:

전출을 희망하는 목회자는 다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a) 전임자 사역 위원회와의 면담에 응해야 합니다; (b) 신원 조회 및/또는 심리 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c) 연회 및/또는 총회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개인 기록의 공개를 승인해야 합니다; (d) 감리사의 평가서 및 기타 감리사회 기록의 공개를 승인해야 하며; (e) 전임 대상 연회에서 요구하는 기타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전임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임 대상 연회는 전근을 신청한 모든 목회자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사회적 증언 — 청원 1건

개별 심의 — 일괄동의안에 포함되지 않음

청원 1156 | ¶ 302 | 51쪽 우리의 증언 업데이트

원안으로 승인되지 않음: 찬성: 38 찬성 / 0 반대 / 0 기권.

일괄동의안 SUP-4A — 지지된 청원서

청원 1155 | ¶ 605.1 | 325쪽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 공천의 일관성 (3/3)

원안대로 지지됨: 찬성: 42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185 | ¶ 611.2 | 360쪽 명예 감독의 지위 명확화

개정안대로 지지됨: 찬성: 45 찬성 / 0 반대 / 0 기권.

개정:

2. 글로벌 감리교회에 가입하는 은퇴 감독은 선임 장로가 되며,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와 연대 협의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명예 감독(¶ 613)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다.글로벌 감리교회에 가입하는 은퇴 감독은 선임 장로가 되며,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와 감독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명예 감독(¶ 613)라는 제목을 사용할 수 있다. 명예감독은 자신이 선택한 연회와 목회자가 되어, 선임 목회자에게 허용된 모든 직책으로 봉사할 수 있다(¶ 520).

청원 1219 | ¶ 607 | 330쪽 총리사의 책임 명확화

원안대로 지지됨: 찬성: 44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220 | ¶ 609 | 338쪽 감리사의 책임 명확화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44 찬성 / 0 반대 / 0 기권.

개정:

¶ 609. 감리사의 책임. 감리사는 감독 및 연회 감리사 직분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이 임명된 지방의 지역사회에서 목회자와 교회의 사역을 감독합니다. 지방감리사(PE)는 목회 공백이 발생하거나 목회자가 임명되지 않은 모든 목회 책임의 대리 관리자이다.목사가 파송되거나 배정되지 않은 경우, 감리사는 해당 목회 변경에 대한 행정 담당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 감리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책임을 지며, 이 책임은 총리사에 의해 다른 장로에게 위임될 수 있다:

교회와 목회자들의 사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해 지원, 돌봄 및 상담을 제공한다.주교 및 총리사와 협력하여, 웨슬리안 관점으로 성경과 전통에 명시된 사도적 믿음을 수호하고 전승하며 선포하며, 『교리와 장정』에 규정된 교회의 교리와 규율을 전달하고 옹호한다.

주교 및 총리사와 함께, 웨슬리안 관점으로 성경과 전통에 명시된 사도적 신앙을 수호하고 전승하며 선포하고, 『교리와 장정』에 규정된 교회의 교리와 규율을 전달하고 옹호한다. 목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해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지원, 돌봄 및 상담을 제공한다.

사역 후보자 모집을 위한 효과적인 체계를 마련한다.총리사 및 감리사회와 협력하여, 사역 후보자 모집을 위한 효과적인 체계를 구현/시작한다.

조언과 관리를 위해 목회자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파송된 목회자 또는 배정된 일반인의 계속 교육, 영적 실천, 현재 사역 활동 및 향후 사역 목표를 포함하는 각 목사에게 대한 서면 또는 전자 평가서를 접수한다. 지역 내 목회자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여 조언과 관리/지휘/감독을 받고, 각 목회자로부터 매년 서면 또는 전자 보고서를 받아, 해당 목회자의 계속 교육, 현재의 영적 실천, 현재 사역 활동 및 향후 사역 목표를 확인한다.

총리사의 지시에 따라, 감리사는 기관목회/연장사역에 종사하는 목회자를 포함하여 각 교구에 파송된 모든 인원에게 대한 적절한 기록이 올바르게 관리되도록 지원해야 한다.총리사의 지시에 따라, 관할 감리사는 기관목회/연장사역에 종사하는 목회자를 포함하여 해당 관할 구역 내의 모든 목사에게 대한 적절한 기록이 올바르게 관리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감독, 총리사 및 감리사회와 협의하여, 목회 구역의 재정렬, 더 큰 교구, 협동 본당, 복수 직원 구성, 새로운 교회개척 및 에큐메니컬 공동 사역을 포함하여 지방 내에서 가능한 최선의 목회자 전략적 배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감독, 총리사, 감리사회 및 영향을 받는 모든 교회 또는 사역 기관과 협의하여, 목회 구역의 재정렬, 더 큰 교구, 협동 본당, 복수 직원 구성, 새로운 교회개척 및 에큐메니컬 공동 사역을 포함하여 지방 내에서 가능한 최선의 목회자 전략적 배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청원 1293 | ¶ 607.1 | 332쪽 총리사의 직무 위임에 대한 유연성

원안으로 지지: 찬성: 46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418 | ¶ 603 | 312쪽 제6부 개정안--감리직

원안대로 지지됨: 찬성: 40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427 | ¶ 605.5 | 328쪽 GEC에 대한 기대 사항 명확화

원안대로 지지됨: 찬성: 41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429 | ¶ 6XX | 310쪽 감독직 위원회의 기대 사항 명확화

개정안대로 지지됨: 찬성: 45 찬성 / 0 반대 / 0 기권.

개정:

당연직 위원구성. 지역 감독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지역 감독직 위원회는 감독 지역의 각 연회에서 평신도 회원 한 명과 교역자 회원 한 명으로 구성됩니다. 각 총회 대표단은 ¶ 604.1b에 기술된 바와 같이 연회에서 해당 지역 감독직 위원회에 소속될 평신도 회원 한 명과 교역자 회원 한 명을 선출합니다. 선출된 사람은 대표단의 회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감독직 공천을 수락한 사람은 지역 감독직 위원회에서 봉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총회 위원회가 대표 배정을 확정한 후 연회가 소집되면, 해당 연회는 지역 감독직 위원회에서 연회를 대표할 평신도 한 명과 교역자 한 명을 선출합니다. 신생 지역은 지역 감독직 위원회에 대표권을 갖지 않습니다.

글로벌 감독직 위원회는 각 지역 감독직 위원회에 직권상 위원 한 명을 파견합니다. 이 직권상 위원은 지역 감독직 위원회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습니다. 이 직권상 위원의 배정은 육 년 임기마다 평신도 회원과 교역자 회원 간에 교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r의 목적은 지역 위원회의 활동과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 간의 연계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지역 감독직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임원을 선출합니다.

구성: 감독 지역 내 각 연회에서 평신도 회원 1명과 목회자 회원 1명씩을 선출하여 감독직 위원회를 구성한다.

a. 정기 총회 개최일로부터 늦어도 180일 전까지, 각 연회는 평신도 회원 1명과 목회자 1명, 그리고 평신도 예비위원 최소 1명과 목회자 예비위원 최소 1명을 선출하여 해당 지역의 감독직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해야 한다.

b. 감독권 공천을 수락한 사람은 감독직 위원회에서 활동할 자격이 없다. 이후 감독직 공천을 수락하는 ACE 위원은 이에 따라 위원회 멤버십을 상실한다.

c. 공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순위의 대기자 중 가장 먼저 가능한 자가 잔여 임기 동안 그 직책을 수행한다. 선출된 예비 인사가 없는 경우, 연회 공천위원회가 평신도 회원 또는 목회자 중 한 명을 임시로 선정한다.

d. 지역 감독직 위원회의 회원은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가 소집하는 본회의 모임(¶ 604.3)의 개시와 함께 시작하여, 다음 정기 본회의 모임에서 후임자의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 6년 임기를 수행한다.

e. 각 감독직 위원회는 자체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

청원 1432 | ¶ 611 | 358쪽 전임 감독의 명예 감독 지위 부여 제한

원안대로 지지됨: 찬성: 41 찬성 / 3 반대 / 0 기권.

일괄동의안 SUP-4B — 청원 기각

청원 1015 | ¶ 609 | 336쪽 감리사의 책임 통합 및 명확화

다음 안을 우선하여 거부됨: 찬성: 40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052 | ¶ 610.7 | 350쪽 파송 시 고려 사항 및 기준

다음에 찬성하여 부결됨: 찬성: 41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290 | ¶ 609 | 340쪽 총리사 직무 위임의 유연성

부결됨 (찬성: 42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291 | ¶ 611.1 | 359쪽 전임 감독이 감독 지역에 배정될 때 지급되는 수당 폐지

다음에 찬성하여 부결됨: 찬성: 41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334 | ¶ 610.9 | 355쪽 임시 목사들

다음에 찬성하여 부결됨: 찬성: 44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424 | ¶ 605 | 324쪽 GEC 멤버십의 적절한 위치

다음에 찬성하여 부결됨: 찬성: 41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425 | ¶ 605.1 | 326쪽 GEC 공천을 위원회 및 협의회와 일치시키기

다음에 찬성하여 부결됨: 찬성: 41 찬성 / 0 반대 / 0 기권.

개별 심의 — 일괄동의안에 포함되지 않음

청원 1288 | ¶ 607 | 331쪽 총리사의 임기를 감독의 임기와 일치시키기

원안대로 가결: 38 찬성 / 6 반대 / 3 기권.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ይህ ገጽ ሆኖ ተቀላቅ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